

국제산업보건동향



일본

〈2009년 후생노동성 발표 자료〉

후생노동성, 업무 부담 증가로 인한 근로자의 과중노동 및 정신건강 대책 발표

후생노동성은 기업간 경쟁의 격화, 기업의 능력주의, 성과주의적 임금 및 처우제도 도입 등으로 업무 부담이 과중됨에 따라 해마다 실시되는 일반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가 증가하고 전체 근로자의 60%가 업무에 대한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하는 등 근로자 정신건강대책을 발표하였다.

■ 과중노동 대책 검토

- 후생노동성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주에 의한 근로자의 정신 및 신체 건강 확보 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근로방식이 다양하게 세분화됨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근로자의 건강 확보는 사업주의 가장 큰 책임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1개월에서 6개월의 기간 동안 매월 평균 4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뇌심혈관계질환 발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과중노동을 실시하는 근로자를 위해서는 의사의 면접지도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안전위생법령 주요 개정 요지

- | | |
|-------------------------------|-------------------------------|
| ① 장시간 근무 근로자의 의사 면접지도 실시 | ⑦ 제조업 원청사업자에 의한 작업 간 연락 조정 실시 |
| ②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 결과 통지 | ⑧ 화학설비 청소 등 작업 주문자의 문서 교부 |
| ③ 위험성 및 유해성 등의 조사 및 필요한 조치 실시 | ⑨ 화학물질 등의 표시 및 문서 교부 제도 개선 |
| ④ 인정사업자에 대한 계획서 면제 | ⑩ 유해물질 노출 작업 보고 신설 |
| ⑤ 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재검토 | ⑪ 면허 및 기능강습제도 재검토 |
| ⑥ 안전위생 관리 체제의 강화 | |



일본

■ 장시간 근로자에 대한 면접지도 제도

- 사업주는 1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이 1개월 당 100시간을 초과하며 또한 피로 축적이 인정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의사의 면접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듣고, 그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면접지도 제도를 위한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
- ② 신청양식 작성, 신청창구 설정 등 신청 절차를 위한 관리체제 정비
- ③ 근로자에 대한 관리체제의 주지

- 대상 근로자

- 장시간 근로에 의해 피로 축적이 인정되거나 건강상 불안을 느끼는 근로자
- 사업장에서 규정된 필요한 조치의 실시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

〈출처〉 <http://www.mhlw.go.jp>

산업의학연구소(BGFA), 다습작업환경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실시

독일 산업의학연구소(BGFA)는 독일재해보험조합중앙회(DGUV)가 실시하는 직업성 피부질환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습작업이 근로자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습작업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것은 독일 내에서 본 연구가 최초이며, 향후 추가 연구 및 예방 대책 수립 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다습작업환경의 신체 영향에 관한 프로젝트 실시 배경

- 2007년 초부터 2008년 말까지 독일재해보험조합중앙회(DGUV)가 실시한 직업성 피부질환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산업의학연구소(BGFA)가 실시한 연구이다.

* 직업성 피부질환예방 캠페인 개요

• 슬로건 : “당신의 피부-삶에서 가장 중요한 2 m²입니다.”

“Your Skin-The most important 2 m² in your life”

• 기간 : 2007. 1. 11-2008. 12. 31

• 주요내용 : 독일 전역의 참여기관 소재지에서 직업성 피부질환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피부질환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 다습작업이란 일반적인 다습환경 내 작업뿐 아니라 습한 환경 내에서 방수장갑을 착용한 작업도 포함되며, 다습환경 노출근로자는 자극성 접촉 습진 등 피부질환 발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방수장갑을 착용하더라도 통풍이 되지 않아 피부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의학연구소는 노출 종류 및 기간에 따른 피부의 영향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 다습작업 노출 근로자를 위한 기존 정책

- 하루 두 시간 이상 습기 혹은 수분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하루 네 시간 이상 습기 혹은 수분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설문조사, 관련 보고서 및 의심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시간에 대한 산출이 이루어진다.

근로자와 환자는 본인의 노출시간을 과장 혹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가평



가를 통해 산출된 데이터는 신뢰도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작업으로 인한 표피층 손상에 관한 피부생리학 임상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습작업환경의 신체 영향에 관한 프로젝트 주요 내용

- 표피의 영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노출 형태 및 노출 시간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 실시 및 특정 피부질환에 관한 고위험 근로자군을 규명하고, 장갑의 착용으로 인한 피부질환에 관한 과학적 증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이에 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습노출 관련 직업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 결과는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GFA : Research Institute of Occupational Medicine of the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DGUV : German Social Accident Insurance Association

〈출처〉 <http://www.bgfa.ruhr-uni-bochum.de/forschung/med30.php>